

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23. 통영시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3.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총무위원회(2024. 6. 4.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상만)

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필요한 법률분쟁 및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추가 선임을 추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변경(안 제2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2025년부터 연간 600만원 추가 편성 예정

다. 합 의: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합의

라. 비용추계서: 「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상비용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마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4. 11. ~ 2024. 5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 5.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최창진) \*세부내용 검토보고서 참조

- 가. 최근 사회 전반적인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법률 분쟁 및 소송 업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- 나. 이러한 행정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,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보호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업무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.
- 다. 경상남도 내 유사한 인구수를 가진 시·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, 대부분 3명으로 위촉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우리시만 2명을 위촉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질 높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고, 이로 인해 업무 지연 및 정책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라.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늘리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, 우리시가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.
- 마. 우리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고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여 행정업무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의 분쟁 소지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시의 원활한 정책 방향 결정과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바. 기타 상위법 위배 사항 없음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